

## 사법관련보도 취재환경과 정보접근

이상현

한겨레신문 사회 2 부장

### 1. 언론의 사법관련 취재 시스템

사회가 고도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으나 한국언론의 취재시스템은 아직도 일제하에 도입돼 굳어진 편제 및 취재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가 석·박사학위 취득자나 의사·변호사 등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들에게 특정 분야의 취재를 맡기는 전문 기자제나 대기자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험단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또 당분간 기존의 취재시스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우리 언론의 사법관련 보도는 주로 사회부 기자들의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한 취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부의 사법관련 뉴스는 크게 나누어 세 부문으로부터 출고된다. 서울시내에서의 사건 사고에 대한 취재를 맡고 있는 경찰팀과 다른 시도에서의 뉴스를 취급하는 지역팀 그리고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지법과 서울지검 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법조팀이 거의 대부분의 사법관련보도를 일상적으로 생산해내고 있다.

#### 1. 경찰팀

서울 본사 사회부 소속인 이들은 경찰서 기자실을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건기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경찰에서 취급하는 각종 고소고발 관련 사건이나 경찰의 기획 수사와 자기 관내에 있는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이 취급하는 각종 사법관련 뉴스의 보도를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 부문의 충실한 취재 보도에만 매달릴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기자들은 서울시경 출입기자를 팀장으로 기자실이 설치돼 있는 서울시내 10개 주요 경찰서를 중심으로 2~4개 경찰서를 나누어 맡아 자기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와 미담 및 화제기사 그리고 각종 기획기사에 대한 취재를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에 대형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쟁의가 있어 특별취재반이 편성될 경우 1차적으로 투입되기도 하는 등 언론사의 기동타격대의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잦은 야근과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는 젊은 경찰기자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경력은 짧지만 의욕과 사명감에 넘쳐 특종경쟁도 심하게 벌이고 있다. 따라서 기사에 대한 「욕심」이 앞서 실수를 하거나 범죄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취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기자들보다 많은 취약계층이기도 하다.

#### 2. 지역팀

서울 이외에 다른 시·도에서의 사법관련 보도는 사회 2 부나 전국부 또는 수도권·중부·영호남 등의 지역취재본부 소속으로 해당 시·도에 주재하는 기자들이 맡고 있다. 이들도 역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사에 대한 취재도 함께

맡고 있다. 80년 언론 통폐합 전까지는 일선 시 군에까지 중앙언론사의 기자들이 주재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도청소재지나 직할시에 지역 실정과 언론사사정에 따라 1~5명이 파견돼 있다. 이들의 인력구성은 정년퇴직을 불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노장 기자에서부터 갓 입사한 초년 기자까지 다양하다.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청소재지에는 2명이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년가 긴 선배 기자가 행정관련 기사를 그리고 후배 기자가 사건 사고에 대한 취재를 나누어 맡고 있다. 그러나 강원충북 제주 등 뉴스가 많지 않은 지역의 도청소재지에는 대다수 언론사가 1명만을 주재시키고 있다. 실제로 충북도의 경우, 현재 서울신문만이 청주에 2명을 주재시키고 있을 뿐 나머지 중앙일간지들은 모두 기자 1명이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해야 한다. 충북에는 지방경찰청과 12개의 경찰서, 지검 1개, 지청 3개 등 수사기관만 해도 17개가 있다. 지역기자들은 이밖에 도청, 교육청은 물론 공단, 금융기관, 노총, 지역 노동단체, 재야단체 등 수십개 단체를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최근 1~2년 사이에 일부 중앙언론사가 부산이나 대구의 경우에는 법원 검찰에 대한 취재를 전담하는 기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에도 지청이나 지원에 대한 직접 취재는 업무를 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방송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지방 방송국 보도국사회부 소속의 법원 및 검찰 출입기자가 별도로 있어 그런대로 취재인력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따라서 지역의 절대 부족한 인력으로 각종 뉴스를 챙겨야 하는 중앙 일간지들은 일선 시·군까지 기사를 파견해 놓고 있는 연합통신과 지방지를 1차 취재자료로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경우보다 훨씬 폐쇄적이고 취재에 비협조적인 지방 사법관련 기관을 상대로 마감시간에 쫓기며 주로 전화를 통해 확인 취재를 한다는 것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다. 특히 확인하려는 기사가 홍보성 기사가 아니고 해당기관에 불리한 기사 등 보도되기를 꺼리는 기사일 경우기자는 온갖 지혜를 짜내고 기지를 발휘하면서 피를 말리는 씨름을 취재원과 벌여야만 한다.

### 3. 법조팀

본사 사회부 소속으로 사법관련 보도를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다. 서소문에 있는 대법원·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취재를 맡고 있는 2~3명과 서초동 서울지검·서울지법 및 법무부등을 커버하는 3~4명의 기자 등 5~8명으로 구성된다.

팀장은 대개 차장급으로 현장 취재 보다는 내근을 하며 법조팀을 지휘하는데, 회사 형편에 따라 부장을 도와 경찰팀과 법조팀이 출고하는 기사에 대해 1차 데스크를 보고, 취재도 총괄하는 사건데스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소문팀의 경우, 대부분의 언론사가 팀장을 제외한 1~2명이 대법원 대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상적인 취재를 맡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의 경우에는 검찰(서울지검·서울고검) 출입 2명, 법원(서울고법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가정법원) 출입 1~2명으로 편의상 나누어 기사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큰 사건이 터지거나 어느 쪽에 일이 많을 경우 자연스럽게 인원을 조정해 같이 취재에 나선다. 따라서 법원출입과 검찰 출입이 나뉘어진 개념이 아니다. 이 같은 지원은 서초동과 서소문 사이에서도 이루어진 다. 가끔씩 대검 중수부가 대형사건에 관한 수사에 착수해 치열한

취재경쟁이 시작되면 각 사별로 서초동 기자 1~2 명이 서소문에 증파돼 취재를 거든다. 서초동 기자들은 또 법무부에 대한 취재를 맡고 있기도 하고 대한변협과 민변 등 변호사단체와 형사정책연구원 법률구조공단 등도 중요한 취재대상이다. 서초동 기자실은 이밖에도 안기부의 간첩 사건이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에 관한 발표 창구이기 때문에 관련 기사 역시 서초동 기자들이 처리해야 하며 서울구치소 관련 기사도 챙겨야 한다. 법조팀은 생산하는 기사량이 많기도 하고 비교적 큰 기사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연조가 짧은 기자가 많지는 않은 편이고, 다른 출입처에 비해 기사도 발리 잘 쓰는 기자들이 배치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다른 부처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이 돼 있어 보통 빠르면 1년에서 1년 6개월 만에 출입기자가 바뀌곤 하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기자들의 출입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다. 또 각 사별로 취재원과의 인맥 형성을 통한 원활한 취재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1~2 명의 기자는 출입처를 바꾸지않고 6~7년을 출입시키기도 한다.

## II. 사법처리 과정에 있는 사건 취재

보도의 일반적 형태검찰과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은 크게 나누어 당국의 공식발표나 기자들의 일상적인 취재 또는 기획 취재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경우 관계자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도움이 될 때가 많다. 법원기사는 크게 나누어 공판 기사와 판결기사로 나누어진다. 공판기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판결기사의 현행 취재 보도에는 여러 문제가 있다. 공보관이 판례에 대해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례적으로 설명하는 대법원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좋은 편이다. 일선 법원의 경우 명목상 공보담당 판사가 있기는 하지만 공보 전담이 아니라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 외에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1. 검찰의 수사 관련 공식발표

검찰이나 경찰 공히 큰 사건의 경우나 기획 수사의 경우 기자실에 엠바고를 걸어놓고 수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경찰의 경우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물고 서울시경찰청이나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획수사의 결과를 공식 발표하곤 한다. 일선경찰서나 검찰 지청의 경우는 단발성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의 신병처리나 기소 단계에서 발표가 있게 되고 이를 출입 기자들이 기사화하게 된다. 이같은 발표기사의 경우 일선 기자들이나 데스크가 가장 부담없이 기사화를 하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결과를 그대로 기사화했다고 해서 기자나 언론사가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사법보도와 관련해 엠바고-공식발표 방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곳은 서초동 서울지검기자실인데, 특수부와 강력부가 많고 형사부도 가끔 있다. 서울지경 특수부는 1부에서 3부까지 3개부가 있으며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다. 검찰 인지수사를 주로 맡고 있으며 고소고발 사건 중 공무원 뇌물이나 정치적 사건, 주요 사회비리 등을 주로 수사하고 있다. 강력부는 조직폭력배와 마약에 대한 수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수사내용이 사전명령이나 압수수색 영장, 감청영장 발부 단계에서 언론에 보도될 경우, 조직 및 하수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엠바고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주로 부장검사나 담당검사가 기자실에 엠바고를 요청하면 기자들이 사안을 판단해 받아줄지 여부를 결정한다.

공안부는 상대적으로 엠바고가 없는 편이나 가끔 안기부에서 조직사건 수사를 할 때 엠바고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연행되면 엠바고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설사 엠바고가 걸려 있더라도 경찰기자들이 연행시점에서 제보를 받고 취재해 기사를 불러올 경우, 이를 보도하지 않을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8월 하순에 일제히 언론에 보도된 사민청관련자에 대한 안기부의 구속 및 수배 기사가 그런 경우다. 안기부는 본격 수사 착수 후 서울지검공안부를 통해 서초동 기자실에 엠바고를 요청했고 기자실에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안기부가 사민청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연행한 시점에 경찰기자들이 이를 포착해 기사를 취재 송고해왔고 각 사 데스크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기자들이 뛰지 않았다면 이 사건에 관한 보도는 안기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시까지 보류될 형편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안기부와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해 보도를 보류해줄 것을 출입기자들과 언론사에 강력히 요청했었다.

엠바고를 걸고 한 수사가 아니면서도 가끔 검찰이 돌발적인 사건에 대해 공식 수사착수 발표나 피의자 구속 사실을 발표하는 경우도 있다.

## 2. 일상적 사건 취재

검찰의 경우 특수부나 강력부 검사와 부장검사방에는 기자들이 수시로 들러 취재를 한다. 이럴 경우 수사기록을 보거나 사무실 분위기, 검사와 수사관들의 대화 등을 듣고 뭔가 감이 잡히면 추적취재에 나서게 된다. 검사가 자신과 친한 기자에게 수사 내용을 비보도를 전제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입수된 정보를 기사화할 경우, 그 검사와는 인간적인 관계까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다른 취재원들로부터도 신망을 잃게 돼 취재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별 문제가 안될 것 같은 사소한 사건은 수사착수 사실이나 피의자 구속사실을 검사가 잘 아는 기자나 부지런한 기자에게 알려주거나 슬쩍 흘려 기사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유능한 기자들은 수사정보를 검사에게 가져다 주고 수사를 시킨 뒤 그 수사를 특종보도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공명심이 있는 검사들은 언론플레이를 해 자기 이름이 보도되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공안부의 경우 각종 시국상황에 대한 경찰의 처리방침이 검찰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기자들이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부서다. 공안부는 시국사건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정치적 사건(예를 들어 12·12, 5·18), 선거사범, 노동법 관련범죄 등을 수사하기 때문에 큰 기사가 많이 나온다. 특수부나 공안부의 경우 법원이 발부한 구속 또는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취재의 단서를 잡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경우에도 사정은 검찰과 비슷하다. 자신과 친한 경찰 간부나 직원이 수사내용을 흘려주거나 사무실 분위기나 수사기록 등을 통해 취재의 단서를 잡게 되면 이를 보완 취재하고 확인해 기사를 쓰게 된다. 경찰이 검찰에 신청하는 영장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주요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돼도 뉴스가 되고 영장이 떨어져도 보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대한 수사에서 또 다른 큰 단서가 되는 것은 제보다. 언론사에는 일상적으로 많은 제보가 밀려 들고 그 가운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민원의 성격이 짙은 일종의 탄원이다. 그러나 특히 전화 제보 가운데에는 검경의 은밀한 수사 사실을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언론사에 누설하는 중요한 제보도 섞여 있다. 물론 언론사간부나 다른 부처에 출입하는 동료 선·후배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제보 가운데 옥석을 잘 가릴 줄 알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여부는 기자들의 유능함을 잴 수 있는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다.

### 3. 기획취재

사법보도의 또 다른 형태는 기획취재다. 기획취재 가운데에는 법무부나 법원행정 처 그리고 경찰청의 법령개체 작업에 관한 행정성 기사가 주류를 이룬다. 이런 유의 기사 가운데에는 인신구속제도의 변화 등 인권과 밀접한 기사가 크게 취급되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취재경쟁이 심하다. 또 관계당국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행정성 「방침」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다 보면 똑같은 사안에 대해 언론사에 따라 정책방향이 전혀 다른 기사를 보도하기도 해 언론의 생리를 잘 모르는 독자들을 헛갈리게 하기도 한다. 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몇 개의 판결이 뚜렷한 경향을 보이면 이를 묶어서 기획 기사를 쓰기도 한다. 법무부의 경우 정책기사가 많은 곳이지만 전담출입기자가 없이 서초동 출입 기자들이 취재를 함께 맡고 있어 발표 기사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 4. 법원취재

대법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공보관제도를 도입해 격주로 화·금요일 오후에 기자들에게 주요판결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브리핑을 마친 판결문은 일단 엠바고가 걸리고 보도되는 날짜가 정해진다. 먼저 쓰고 싶어도 엠바고에 묶여 그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정이 있을 땐 정해진 날을 넘겨 엠바고가 풀린다. 기사가 폭주할 경우 차일피일 연기되다 기사화되지도 않은 채 사장돼 버리는 기사도 많은데, 보도진들의 과열 경쟁은 이 같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즉 공보관이 브리핑한 판결문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은 기자들의 개별적인 취재대상으로 기자들은 서로가 낙종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취재내용에 대해 또다시 기자실에 엠바고를 걸기도 한다. 엠바고가 수심건에 이를 경우 결국 기사화되는 것보다는 때를 놓쳐 빛을 보지 못하는 판결건수도 상당수에 이른다. 공보관의 브리핑은 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취재기자들의 판결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대법원과 출입기자의 상호 필요에 의해 채택된 제도다. 한편 전국법원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은 전국법원에 대한 관련예규를 수시로 내려보내고 있으나 기자들에게 노출되기란 쉽지 않다. 한편 지난해부터 공보관제도가 도입된 대법원과는 달리 일선 법원에서는 아직도 기자들이 취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초동의 경우 서울고법, 서울민사지법, 형사지법, 가정법원 등 4 군데 법원마다 공보담당 판사를 두고 있으나 공보 전담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또 법원이라는 조직이 각 재판부 마다 자기 고유영역이 있어서 판사들간의 공유되는 부분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공보 담당은 물론 법원 원장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자들이 요구하면 그때서야 새로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는 못하고 있다.

### Ⅲ. 올바른 사법관련 보도의 장벽 및 문제점

취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우리 언론의 사법 관련 보도는 일상적으로 오보와 피의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게다가 검찰·경찰·법원 등 사법당국도 지나치게 정보제공에 인색할 뿐더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취재에 나서는 기자들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수사기관에서는 엠바고의 남용, 언론플레이,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는 언론 따돌리기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 1. 정보접근 차단

검찰의 경우 취재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검사들 개개인이 각각 독립적인 수사관청이기 때문에 검찰청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검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내밀한 내사단계까지 포함해 검찰이 하는 일의 10% 정도 밖에 기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바꾸어 말하면 검찰의 경우 기자들 입장에서는 정보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수사기관의 기본적 속성에 비춰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보안은 윗사람들에게 질책을 받지 않기 위해 무조건 감추고 보자는 식의 경찰의 수준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나 내사에 착수했을 때,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질 경우 로비에 의해 수사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대형 사건을 많이 취급하는 대검찰청의 경우를 보면 우리 검찰이 얼마나 수사정보 제공에 인색한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대검은 최근 들어 내사 및 수사에 대한 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또 실제로 언론이 내사나 수사 사실을 감지해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도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상식처럼 돼 있다. 따라서 정찰이 공식적으로 부인하더라도 기사를 쓰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즉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달라 확인과정에서 검찰이 완강히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해도 1면 머리기사로 이 오보가 보도될 가능성도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물론 이런 기사의 말미에는 항용 「그러나 검찰관계자는 관련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는 표현이 보일 듯 말듯 들어 있기는 하다. 데스크나 현장의 취재기자들이 「검찰이 언제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시인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보안유지를 명분으로 중수부 수사과장실과 수사관실이 위치한 12층을 아예 폐쇄해 기자들의 접근을 전면 차단한다. 이에 따라 대검수사는 사건이 종결되고 난 뒤 기자들에게 검찰이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보도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가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관련해 우려를 사고 있다. 검찰은 심지어 수사과정에는 소환대상 등 수사일정을 전혀 밝히지 않아 오보를 양산할 뿐 아니라 출입처와 보도진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대검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지를 실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검중수부는 최근 전 한전사장

안병화 씨의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된 후에도 안씨에게 뇌물을 건넨 재벌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이라는 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도 거부, 지난 5일 최원석 회장을 소환 조사해 놓고도 조사 사실을 숨겼다. 또 김우중 회장을 소환하면서 보도진들을 따돌리기 위해 현관문이 아닌 「쪽문」을 통해 소환하는가 하면, 김회장을 돌려 보낼 때도 보도진의 눈을 피해 엘리베이터로 5층까지 내려온 뒤 나머지는 계단을 통해 걸어내려오게 한 뒤 살며시 현관문을 통해 빠져나가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번 안병화 씨 뇌물사건이나 지난해의 율곡수사, 김승면 한화그룹 회장 외화 밀반출사건 등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형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12층 수사실을 전면 폐쇄하고 담당 수사검사의 면담이 원천봉쇄되고 중수부장을 면담하도록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면담에서 중수부장은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수사 진전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하기 일쑤다. 울들어 대검공안부의 경우에는 기자들에게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연막」을 치기도 하며 기자들의 경쟁심리를 이용해 특정기자에게 정보를 흘려 대서특필하도록 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공안 분위기를 확산시키기도 했다. 압수수색이나 경찰력 투입에 대해서는 아예 침묵하는 편이며 폭력행위와 불법시위가 있을 경우 엄단한다는 방침을 사건발생 이전부터 언론에 주지시켜 예방하는데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최환 대검 공안부장은 지난 8월 16일 서강대 박총 총장에게 대검 관계자를 보내 조사를 벌였음에도 17일과 18일 절대 조사를 벌인 적이 없다고 거듭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박총장이 면담사실을 털어놓자 「박 총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검사를 보내 몇 마디 물어본 것으로 조사가 아닌 면담이다. 따라서 기자들을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대법원을 비롯한 법원도 대언론 보안이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대법원의 경우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선고 내용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취재의 벽이 두텁다. 그래서 판결에 관한 한 수사치관인 검찰보다 더욱 보안을 의식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보도진들이 대법관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대법관이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별한 경우에만 대법관을 만나는 것이 마치 관행처럼 돼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관을 어떻게 취재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이다. 일선 경찰과 검찰의 경우도 높은 취재벽이 기자들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검찰에서 영장신청 대장을 보는 것도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럴 경우, 안면을 통해 어쩌다 한번 보거나 담당검사에게 전화해 특정사안에 대해 묻는 정도에 그칠 뿐이다. 지난 6월 충북 영동군에서 있었던 군용보리쌀유출사건의 경우를 통해 민감한 사건에 대해 당국자들이 얼마나 이를 언론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숨기느니를 살펴보자. 경찰은 「한겨레신문」에 군용보리쌀 유출사건에 관한 제보가 6월 9일에 접수돼 청주에 주재하는 기자가 2~3일에 한번씩 수사 상황을 전화로 점검하자 「아직 수사중이다」 『현병대에서 수사중이라 우리는 모른다』며 기자를 따돌렸다. 그러나 6월 29일 기자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민간인 집에 전화를 걸어 이미 20일 전인 10일에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사실에 대한 집중적인 취재에 들어갔다. 영동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사과장과 서장에게 그 동안 거짓말을 해온데 대해 항의하고 사건내용을 캐물었다. 그러자 경찰간부들은 「현역 군인이 관련된 사건인데다 복핵 문제 등 시국상황을 고려 해군부대쪽에서 보안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말해줄 수 없었다」면서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구속자의 성명,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마저 밝히지 않았다. 영동지청 역시 「이미 청주지검으로 넘어갔다」면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 청주지검 담당자는 「이미 법원에 송치해 알 수가 없다」며 인적사항을 기억할 수 없다고 얼버무렸다. 청주지법은 근무시간이 지나 간부들과 접촉이 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은 청주지역 기자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이 기사를 다음날 아침치 신문에 게재했다. 일부 인적사항이 부정확하더라도 군부대에서 사병들 부식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져 군인과 민간인이 구속됐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예민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보나 보안쪽 경찰간부들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입을 다물어 기자들의 정력을 소진시킨다.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간부도 「예 그런 사건이 있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자리에 없습니다. 서랍도 잠겨 있고…… 내일 다시 연락하시지요」라고 말하기 일쑤다.

## 2. 엠바고의 남용

검찰 특수수사의 특수성에 의해 수사를 잘 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남용되는 측면이 있으며 기자들도 엠바고를 걸면 취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취재의 폭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단계에서 기사가 나가면 실제로 수사를 거의 할 수 없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엠바고가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정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갈수록 적법절차를 준수해 피의자의 신병확보, 압수수색 등을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착수단계에서 언론에 노출돼 보도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수사기관이 수사편의를 위해 불법 연행과 무단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밟아 차분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언론이 엠바고제도를 잘 활용해 도울 필요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엠바고는 원래의 의미의 엠바고에서 많이 변질된 것이라는 데 그 폐해가 있다. 사실 엠바고란 보도될 내용의 대강을 기자들에게 알려준 후 일정시점 이후에 보도되도록 언론과 취재원 사이에 신사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등 우리 수사기관은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채 단지 제목 하나만으로 엠바고를 요청한다. 엠바고의 시한도 정하지 않는다. 수사를 해봐야 알게 아니냐는 얘기다. 지난해 한호선 농협 회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사건 때 검찰은 「농협 비리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단 한마디만으로 엠바고를 걸었다. 이처럼 사건 일체의 내용에 대해 엠바고를 걸 경우, 설사 새로운 사실을 취재했더라도 보도할 수 없게 된다. 또 외부 압력 등에 의해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수사방향이 크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는 사실이 취재가 돼도 이를 보도할 수 없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심지어 엠바고가 사건보도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다. 물론 기자들의 안일무사가 엠바고의 남용을 부추기기도 한다. 일단 엠바고가 걸리면 취재경쟁을 벌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취재원의 무리한 엠바고 요청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일부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명분으로 엠바고를 건 후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 단계에서야 그 결과를 발표하곤 한다. 사실기소 전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발표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모두 형법 126 조의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는 행위다. 이 법규에서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사법현실에서는 약자인 피의자들이 피의사실공표에 관해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국민들의 법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부분으로 수사기관 관계자를 고소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내세운 당국자들의 수사정보 제공거부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 3. 일상적인 오보의 함정들

수사 기사의 경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식발표를 제외하고는 당국자의 「말」에 의존한 취재가 많다. 이에 따라 수사당국자의 말만 믿고 기사를 썼다가 이 관계자가 나중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기자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혼자 뒤집어 쓰게 된다. 실제로 지난 91년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미스 코리아 출신의 마약복용자를 구속시켰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 구속자들의 매매춘 행위를 기사로 썼다. 그런데 이 매매춘 대목은 수사발표문에는 없었고 청사들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구두로 설명한 것이었다. 그 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한 여자가 각 언론사에 「나는 몸을 판 적이 없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소송을 제기하려 해 담당 기자들이 이 여자에게 극구 사과하는 등 난리를 피운 사례가 있다. 당시 대부분의 기자들은 검사의 말만 믿고 기사를 썼는데 나중에 문제가 터지자 해당 검사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고 했지 그렇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자신의 발언내용을 뒤집었다. 그렇다고 위험부담을 무릎쓰고라도 수사당국자의 「말」을 기사화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취재환경이다. 실제로 강도, 교통사고, 살인, 화재 따위의 단순 사건을 제외하고는 조금이라도 「예민한」 사건의 경우(이런 사건일수록 독자들의 관심도 크고 취재경쟁도 심하다)에는 사실상 취재가 불가능할 때가 더 많다. 이에 따라 친분있는 당국자를 통해 몇 가지 정보를 흘려 듣게 되면 이를 기사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기사의 경우 운이 좋으면 특종을 할 수도 있지만 오보의 위험을 안고 있기도 하다. 법원 취재 및 보도에 있어서는 판사들의 「전문적 시각」과 기자들의 「상식적 시각」과의 괴리가 취재를 어렵게 하고 광의의 오보를 하게 한다. 사실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으나 기자들은 어려운 법리논쟁에는 무관심한 반면 일반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보다 감각적으로 와닿는 사실관계 취재에 치중하게 된다. 올해 초 여의도 광장에 택시를 몰고 들어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여의도 살인질주」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선고가 나기 전날 기자들은 판사를 찾아가 「쟁점이 뭐냐」고 질문한 바 있다. 그러자 판사의 답변은 기자들을 곤욕스럽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 판결에 대한 기자들의 관심은 우선 정신이상자가 저지른 사건인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배상해야 하느냐, 배상한다면 얼마나 배상해야 되나 등이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 서울시가 이번 사건에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 (당사자 적격)이 관건」이라고 답변했다. 좀더 쉽게 말하자면 「여의도 광장의 관리책임이 서울시와 영등포구청 중 어느 쪽에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을 보다 정확하게 취재해 기사를 쓰기 위해 판사를 만나더라도 기자들은 이내 대화를 포기하고 「자의적 해석」을 내려 기사를 쓰게 되곤 한다. 또 판사들은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하지만, 기자들은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즉 판사는 긴 판결문내에서 한 사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측면을 다 말하고 이를 종합해 하나의 결론을 내린다. 결론은 간단하다 하더라도 판사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수백 수천가지 판단요가 고려됐기 때문에 어느 한 사실만 부각시켜서 바로 결론을 끌어대는 기자들의 「단순함」에 혀를 차곤한다. 서울가정법원의 판결 중 「명절 때 시댁 찾아가기를 꺼리는 등 전통적인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이혼사유」라는 내용의 기사가 일부 신문에서 제법 크게 다뤄진 일 있었다. 그러나 이 기사가 나간 직후 재판부는 기자들에게 이 기사에 대해 항의하고 판결기사를 신중하게 써줄 것을 당부했다. 재판부가 이혼을 인정해준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등 이들 부부가 더 이상 가정을 꾸려갈 수 없을 정도로 파탄지경에 빠졌다는 점이 전체적으로 고려돼 내려진 것인데, 어떻게 부인의 잘못만을 확대 부각시켰냐는 것이다. 그러나 기자들은 초년병 시절부터 한정된 지면에 주제가 흐려지지 않도록 기사를 만드는 방식에 익숙해 있다. 한정된 지면에 마감시간에 맞춰 기사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기사가 되게」 이른바 「야마를 맞춰」 복잡한 사실을 단순명료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예전과는 달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이 밖에 판사들의 권성적인 태도나 불친절함 때문에 비전문가인 기자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써야되는 기사인데도 아예 대화를 포기하고 자기생각대로 처리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한 마디로 법원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완벽한 결론을 내리려는 판사들을 답답해 하고 있다. 법원 관련 기사의 경우 판사들은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결론을 내리려 하나 기자들은 한시가 급하다. 이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판결 관련 기사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으나 법원행정이나 정책 등의 문제에서는 쉽게 부딪치는 문제다. 물론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마찬가지이나 특히 법원은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민사법원에서는 국제소송 전담부서가 생기면서 역할과 기능, 앞으로의 제도개선 등이 판사·변호사·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다. 당시 기자들은 그 논의 내용을 기사화하려 했으나 법원쪽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발표할 수 없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했고 기자들은 이에 응했다. 이후 그 논의 내용이 발표된 것은 5개월 뒤인 8월 초. 물론 그 사이에 인사이동으로 담당 기자가 바뀌기도 했고 이미 기자들의 관심은 식어서 무슨 내용이었는지 마저 기억도 못할 지경이 됐다. 법원 관계자는 늦은 이유에 대해 「논의 내용을 모두 녹취한 뒤 이를 다시 문서로 작성해 토론자개개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자기가 한 말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첨부할 의견은 없는지 일일이 확인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해 기자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동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한겨레신문 경제부 차장, 사회부 차장
- 현재 한겨레신문 사회 2 부장